| 기본교육 과제 |
| --- |

**작성자 : 유현종**

###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8조의2):**

#### 정의 및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는 건설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적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제약사항:

건설사업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모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 시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심사 및 허가 절차: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을 원할 경우, 건설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 제약 해제 조건:

건설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직접시공 제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품질 높은 공사를 유도합니다.

###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제35조):**

#### 정의 및 필요성:

건설산업의 특성상 많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직접지급의 원칙:

발주자는 하도급인이 아닌 중소기업금융공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의 지연 및 불합리한 조건 발생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간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와 절차:

특별한 사유로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접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벌칙 규정: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유도하고 유지합니다.